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8세”를 각각 “13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3조(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· 내용 · 방법 및 절차 등)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「아동수당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<u>8세</u>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<u>8세</u> 미만 아동의 보호자: 매년 1월 31일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3조(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· 내용 · 방법 및 절차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3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 <u>13세</u> ----- 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